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 규정(안 제3조)

나. 제설·제빙작업 시기의 구체화(안 제4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구체화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
(안 제5조)

라. 제설·제빙작업의 필요한 도구 및 안전장비 구체화(안 제6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건축과, 및 도로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通行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 양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

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

대상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별표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5층 이상 ~ 15층 이하		※ 다세대주택 제 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중소형 건축물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 점(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 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 선터미널
	문 화 및 집 회	공연 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커스장 등
		집회 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집 회 시 설	관람 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기장 등
	전시 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 원, 수도원 등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바목에 따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라,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쥘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소관 실 · 과		안전재난과
입 안 자	과 장	류 형 욱
	담 당	강 창 조
	담 당 자	전 경 호 (480-6744)